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경남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경남동부 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남동부 보훈지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 내용이며, 법령개정 및 공표 등으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지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